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A부터 Z까지**

정관의 이해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A부터 Z까지

정관의 이해편

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A부터 Z까지 책자 내 법제도 등은 2022년 4월 기준이며, 수록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용 변경 및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CONTENTS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A부터 Z까지

정관의 이해편

01. 협동조합의 규범체계 이해

1.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범주	04
2. 정관의 개념과 중요성	05
3. 정관의 구성 체계 이해	06

02.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이해

1. 제1장 총칙	08
2. 제2장 조합원	12
3.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16
4. 제4장 총회와 이사회	20
5. 제5장 임직원 및 사무국, 운영지원전문기관	28
6. 제6장 사업과 집행	38
7. 제7장 회계	42
8.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44

03.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규약·규정 예시

1. 총회 운영 규약 예시	45
2. 이사회 운영 규약 예시	50
3. 임원 선출 규약 예시	55
4. 갈등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예시	60

안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A부터 Z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A부터 Z까지는 지방자치단체·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부터 운영까지의 필요한 핵심자료로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 ✓ 본 책자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 자치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최상위 자치규범인 정관을 중심으로 근거법령인 협동조합기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하위 규범인 규약 및 규정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협동조합 자치규범 체계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정관	협동조합 규약	협동조합 규정
특징	•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의 근거 법령 • 자치규범은 기본법을 근거로 구성	• 협동조합 최고 자치규범 • 설립인가시 필수 제출	• 정관 이외에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 • 설립인가시 필수 제출사항 아님	• 정관 및 규약 외 경미한 사항
비고	• 총 7장 119조로 구성	• 총회 의결로 효력 발생 • 14개 필수 기재사항 포함	• 총회 의결로 효력 발생 • 총회운영규약, 이사회운영규약등	• 이사회 의결로 효력 발생 • 사무국 규정, 인사규정 등

- ✓ 본 책자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를 기초로 정관의 구성체계를 먼저 설명하고, 74개의 조항 중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협동조합 정관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 또한, 총회, 이사회, 갈등관리위원회 등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실제 운영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 규약 및 해설을 통해 (예비)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모두 본 책자에 담을 수는 없지만, 본 규범집을 기초로 향후 조직에 필요한 규칙들을 새롭게 정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 본 책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협동조합의 규범 체계 이해
제2장: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이해
제3장: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규약·규정 예시

01

협동조합의 규범체계 이해

1.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범주

1)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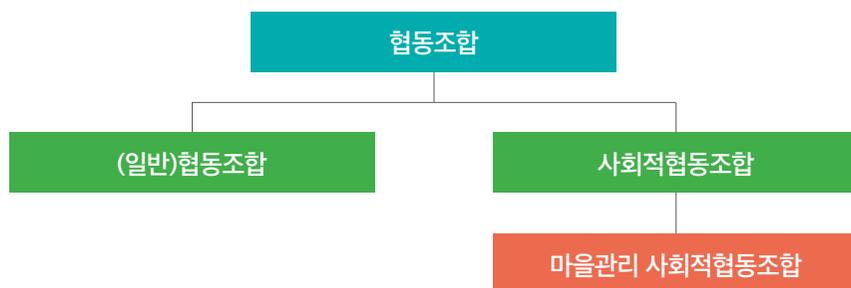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2)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3)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기초생활인프라를 운영관리하며,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이자 주민 결사체



알아두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 해당합니다.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2. 정관의 개념과 중요성

1) 정관 개념

-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협동조합의 최고 자치법규

2) 정관의 중요성

- 정관을 통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근거법령인 <협동조합 기본법>이 구현
- 협동조합의 ①사업 집행 시, ②조합원과의 의사결정 시, ③갈등발생 시 등 운영과정 속 기준이 됨
- 정관은 조합원 간의 계약서라 할 수 있으므로 정관의 해석 및 이해 필수

3) 정관 학습의 필요성

- 정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사장뿐 아니라 모든 조합원들이 함께 정관을 이해하려는 노력 필요
- 정관 학습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식 해소 가능
- 이사장과 소수의 이사만 정관을 학습하거나, 정관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 채, 정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외시하는 방식은 지양



알아두기

발기인 및 조합원들은 정관을 통해 일반 기업과는 다른 협동조합만의 독특한 운영방식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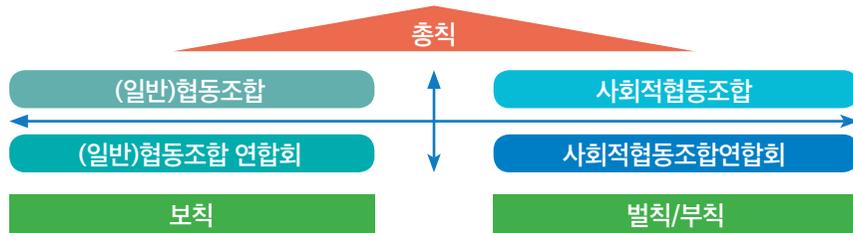
PLUS 정관을 쉽게 학습하기 위한 방법

-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및 행정 용어'와 '74개 내외의 정관 조항에 대한 부담'으로 정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정관의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아래와 같이 체계와 필요 내용 중심으로 학습하다보면 정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① 정관의 전체 구성에 대한 학습
 - ② 중요한(자주 활용되는) 조문과 중요도가 낮은(활용도가 낮은) 조문을 구분
 - ③ 중요도에 따라 강약 조절을 하며 정관 내용 학습

3. 정관의 구성 체계 이해

1) 협동조합기본법 구성 체계 이해

- 협동조합기본법은 총 7장 119조로 구성
- 각 장은 총칙,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보칙, 벌칙/부칙으로 구성
- 사회적협동조합은 대부분 (일반)협동조합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총칙과 (일반)협동조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뒤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내용 숙지 필요



2) 협동조합기본법 구성 방식과 정관 구성 방식의 유사성

- (일반)협동조합에 관한 구성방식은 설립에 대한 규정 후 조합원, 기관, 사업, 회계를 중심으로 구성
-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은 설립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이므로 낮은 비중으로 구성
- 등기 관련 규정 및 감독 관련 규정(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임원이라면 눈여겨 봐야할 부분)
- 협동조합기본법의 대부분의 내용이 정관에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조합원은 협동조합기본법의 개별 조문을 살펴보기 전 정관을 바로 살펴보는 것을 권장
- 협동조합 기본법과 정관은 아래 그림과 같이 동일하게 구성



3) 크게 4개의 협동조합기본법 구성 방식과 정관 구성 방식의 유사성

- **총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 규정
- **조합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 전체 내용은 '2장 조합원'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인 출자금 등에 대해서는 '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에서 규정
- **기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분. 의결기관에 대해서는 '4장 총회와 이사회'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5장 임원과 직원'에서 규정
※ 이러한 특성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주민 결사체'의 바탕
- **사업**: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핵심 기능.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민 결사체인 동시에 사업체이므로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6장 사업과 집행'과 함께 '7장 회계'를 연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



알아두기

정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총칙, 조합원, 기관, 사업**으로 나눠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LUS 정관 작성에서 활용하기

- 정관의 각 내용은 그 성격에 따라 필수 기재사항과 임의 기재사항으로 나뉩니다.
 - ① 필수 기재사항: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일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으로 법에서 규정한 기준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
 - ② 임의 기재사항: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으로 협동조합의 운영원칙에 맞게 조합원들의 의사를 토대로 규정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처음 설립하는 이들은 필수 기재사항과 임의 기재사항을 구분하기 어려워 **자칫 정관을 잘못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22년 2월)」를 참고하여 정관의 전체 구성 및 필수 기재사항을 먼저 확정된 뒤 개별 조합의 특색을 반영하여 임의기재사항 및 규약과 규정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02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이해

1. 제1장 총칙

- 제1장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근거와 명칭, 목적 등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
- 핵심 조문은 제1조(설립과 명칭), 제2조(목적), 제3조(조합의 책무)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도시재생 사업명)에 따라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라 한다.

- 정관 제1조(설립과 명칭)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의 설립 근거와 명칭에 대해 규정
- 마을조합의 **설립 근거**는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기본법**'으로 해당 법령에 의해 세부 사항을 규정
- 또한,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기초로 설립됨에 따라 타 마을조합과의 구별 및 공공지원의 필요 요건 충족을 위해 해당 도시재생사업명 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명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
- 일반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협동조합의 명칭은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마을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도시재생사업명**을 명칭으로 하는 것을 권장

알아두기

전국에 설립된 마을조합 명칭이 궁금하다면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https://www.city.go.kr/>)에서 사업마당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란?	사업마당	지식마당	참여마당	알림마당
개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도시재생계획체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체계	우리동네 재생정보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특성지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온라인 도시재생 학습 재생정보실 R&D 연구성과 추진조직 소개 연구과제 구성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반영 보고서 개원구호 연구홍보서	홍보게시판 인재정보/채용공고 희망센터 온라인 설문조사/투표	공지사항 행사정보 보도자료 언론기사 도시재생 종합정보 개방체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주민들을 위한 제과야 서비스를 공급하며,
 수익을 마을에 재투자하여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주민자조조직입니다.

- 본 장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22년 2월)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 각 장마다 중요한 조문을 선별하여, 핵심 내용을 별도로 강조했습니다.

제2조(목적)

마을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협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추구한다.

1. **기초 생활인프라 유지·관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효과의 **지속성 확보**
2.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지속적 공급을 통한 삶의 질 제고
3. 공동출자·공동생산·공동소비·지역사회 재투자를 통해 **지역사회 선순환 체계 구축**
4. 위 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권익 증진**

- 제2조(목적)는 마을조합의 목적에 대해 규정
- 제2조(목적)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주·자립·자치'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 선정한 협동조합 7원칙 중 4원칙인 "자율과 독립"을 반영
-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 조직으로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



알아두기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 유형에 맞는 고유의 설립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
- 제2조(목적)는 제61조(사업의 종류)와 함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항으로 표기되므로 마을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내용, 의사결정 등의 한계를 결정하는 중요 사항
- 제2조(목적)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목적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용 추가 가능
- 정관 작성예시에 명시된 4가지 사항은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 정의'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재생 정의'와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함께 보는 것을 권장



알아두기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 ① 마을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② 마을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3조(조합의 책무)는 협동조합 7원칙 중 5원칙(**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7원칙(**협동조합간 협동**)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
- 위 내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사업)의 제1항 1·2호에서 협동조합의 필수사업으로 규정



알아두기

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사업)

-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마을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시/군/구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마을조합의 **사업구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그 지역을 포함한 ○○시/군/구까지**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 ① 마을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마을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ooo.com)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 ① 마을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마을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마을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구역)는 마을조합의 사업구역 및 그 범위를 규정
- 일반적으로 마을조합은 거점시설 기반의 서비스 또는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민 대상 서비스가 주 사업이므로 사업구역을 크게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해당 지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근 법정동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권장
- 제9조(규약 또는 규정)에 따라 정관 외에 마을조합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또는 변동 가능성이 높은 사항들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별도 마련 가능

2. 제2장 조합원

- 제2장 조합원은 조합원의 가입, 탈퇴, 제명에 관한 규정으로 마을조합의 조합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내용
- 핵심 조문은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제15조(제명),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제5조 사업구역 내 거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로서, 마을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구 내 거소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않은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 제62조 마을조합 사업으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
2. 생산자조합원 : 제62조 마을조합 사업에 관련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함께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자
3. 직원조합원 : 마을조합 사무국에 고용된 조합원
4. 후원자조합원 : 마을조합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문 등의 서비스, 자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합원
5.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마을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마을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마을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가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까지 마을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④ 마을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협동조합의 제1원칙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가입의 자유가 있는 결사체
- 반면, 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①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②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

- 마을조합은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기초로 설립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 거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를 가입조건으로 두고 있으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예외 허용 가능
- 마을조합은 조합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소비자·생산자·직원·후원자·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유형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
- 마을식당의 경우 식사를 하는 조합원은 '소비자조합원', 농산물을 공급하는 조합원은 '생산자조합원', 고용된 조합원은 '직원조합원'에 해당
- 생산자조합원은 소비자조합원 및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마을조합 활동을 통해 자신의 수익이 창출되고, 자신이 제공한 제품 및 서비스 등에서 발생가능한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시 요구되는 '최소 출자좌수'를 달리 정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제18조(출자)참고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제13조(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에서 '유한회사'와 유사
-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에 따라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출자액을 한도로 청구 가능

제14조(탈퇴)

-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마을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마을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마을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0년 이상 계속해서 마을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 마을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총회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마을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마을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마을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제명)에서 명시한 제명의 4가지 사유(1호~4호)는 눈여겨 보는 것이 필요
- 가장 중요한 부분은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많은 협동조합에서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
- 조합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해를 끼치는 경우 제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제명으로 가기 전 상담 등으로 단계별 제재 과정 필요**
- 조합원 제명의 경우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에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조합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 부여 필요(의견진술권)**
-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원의 제명을 결의할 경우 아래와 같은 단계별 절차를 반드시 준용



- 마을조합은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갈등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이므로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사전 조정 및 중재, 징계 등에 관한 처리절차를 논의하는 것도 가능(갈등관리위원회는 중재 및 사안에 관한 논의·자문 기구, 징계의결은 총회에서만 가능)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마을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① 마을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에 따라 탈퇴·제명조합원은 출자금 환급 청구 가능
-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에서 규정하는 회비와 다른 특징으로, **회비는 환급 청구 불가**
- 조합원의 탈퇴·제명 즉시 조합이 출자금을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환급시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 예를들어, 회계연도가 1월에서 12월인 조합에서 2022년 8월 탈퇴하면서 환급 청구를 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인 2023년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2023년 총회 이후부터 환급 가능



알아두기

마을조합 정관(예시)

제33조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이 규정되어 있으나, 제35조에 따른 특별한결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합니다.

3.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 제3장은 조합원의 일차적인 의무사항으로 출자금 납부 의무와 함께 적립금을 포함한 마을조합 자본 형성에 대해 규정
- 핵심 조문은 제18조(출자),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제25조(법정적립금), 제26조(임의적립금)

제18조(출자)

- ①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출자금은 가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0일까지 납입한다.
- ④ 마을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마을조합 또는 마을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 ① 마을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또는 조합원이 요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마을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마을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 ② 마을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0일 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전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 제18조(출자)는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라고 하여 조합원의 최소 출자금액을 규정

- **생산자조합원은** 소비자조합원 및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마을조합 활동을 통해 자신의 수익이 창출되고, 자신이 제공한 제품 및 서비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가입 시 요구되는 ‘**최소 출자좌수**’에 **차별화 가능**
- 제18조(출자) 2항은 협동조합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함
- 출자금액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정기총회 이후 조합원에게 공지 필요

제20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 ⑤ 마을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 ① 마을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마을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 ③ 마을조합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마을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마을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출자금액의 감소의결 등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예시를 참고하여 반영하는 것을 권장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 ① 마을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마을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 1. 기본회비
 - 2.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 3. ○○사용료
 - 4. ○○수수료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하며, 이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마을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4조(과태금)

- ① 마을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마을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 협동조합의 자본인 출자금도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마을조합 설립 후 공모사업에 지원할 경우를 대비하여 출자금은 유보하는 것이 필요(공모사업 요건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 가능)
- 따라서 초기 사무국 등의 운영을 위해 회비(분담금)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
- 출자금은 탈퇴 이후 환급받을 수 있으나, 회비 등은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제25조(법정적립금)

- ① 마을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총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임의적립금)

- ① 마을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은 **협동조합의 '예비비 통장'**과 유사
- 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법으로 저축을 강제하는 것이 법정적립금이며, 마을조합의 상황에 맞게 하는 임의저축하는 것이 임의적립금

4. 제4장 총회와 이사회

- 제4장은 협동조합의 의결기구인 총회와 이사회에 대한 규정으로, 마을조합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
- 본 장은 의결의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조항 확인 필요

제27조(총회)

- ① 마을조합은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마을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총회로, 조합의 사업 및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논의하는 기구
- 공식적으로 정관에 규정된 **모든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행사

제28조(대의원총회)

-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대의원의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 ④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 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⑥ 대의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⑦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⑧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⑨ 대의원총회는 마을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 대의원 총회는 조합원 수가 200명 이상일 경우 조합원 중 대의원을 선출하여 운영하는 일종의 대의기구로 아직 마을조합의 운영사례는 없으며, 주로 조합원의 수가 많은 소비생활 및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활용하는 방식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총회의 유형은 매년 1회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정기총회와 특별한 안건에 대한 의결이 필요할 경우 소집하는 임시총회로 구분
- 일반적으로 회계 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정하므로 통상 3월 전 정기총회 개최 필요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으나, 제31조(임시총회)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할 경우, 이사회, 조합원, 감사가 이사장에게 소집 요청 가능
- 규정된 시일 내 이사장이 소집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31조(임시총회)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 → 조합원 대표 순으로 소집 가능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 총회 공고는 조합원이 총회의 소집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통지방식은 우편,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 활용 가능하나, 반드시 조합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

제32조의2(조합원제안권)

- ①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마을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중 9가지 항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반드시 포함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에 열거된 항목 외 임의로 추가가 가능하나, 운영 초기 변동성이 높은 사항을 반영할 경우 총회를 자주 개최하는데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매년 총회에서 필수적으로 의결되는 사항은 4.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결산보고서의 승인, 6.감사보고서의 승인이며,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은 이사회에서 작성
※제42조(이사회 의결사항) 참고
- 제32조의2(조합원제안권)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견제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조항
-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를 얻은 제안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조합원이 조합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 부여

제34조(총회의 의사)

-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5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마을조합의 합병·분할·해산,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총회 의결사항에 따른 의결 기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일반사항)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 (특별의결사항)
1.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결산보고서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그 밖의 사항	1. 정관의 변경 2. 마을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 제34조 3항 역시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견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전 통지되지 않았더라도 2/3출석과 2/3찬성으로 긴급 의안 상정 가능
- 제34조 4항은 조합원간 이해충돌방지 차원에서 예시 조항으로 명시하였으나, 마을조합은 ①제한된 사업구역 내 ②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③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④상호 빈번한 거래 및 사업교환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포함 여부를 신중히 검토 필요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마을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마을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결사체이자 사업체로 모든 조합원은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이는 주식회사와의 큰 차이점
- 단,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대리인의 지정방식 및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
-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되기에 최소 1/4을 초과하는 조합원이 참석해야 총회 개최가능한 의사정족수 달성(예. 50명이 조합원인 경우 26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1인 1대리를 할 경우 13명 이상은 참석 필요)
- 제38조(총회의 의사록)의 작성방식 역시 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반드시 준수

제41조(이사회)
 ① 마을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3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마을조합의 가장 큰 의결기구를 총회라고 한다면, 이사회는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일상적인 사업 및 조직관리를 논의·의결하는 기구
- 일부 이사장에게 권한이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회의 소집을 게을리할 경우,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 소집 가능
-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조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특정 가능

제42조(이사회 의결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마을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그 밖에 마을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제62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 의사)

-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4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42조(이사회 의결사항) 중 1호부터 4호까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사업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명시 가능
- 단, 총회 의결사항 중 필수 의결사항 9가지는 이사회에 위임 불가
-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이사회는 매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작성해야 하며, 결산보고서도 대체로 이사회에서 작성

-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매년 총회에서 필수적으로 하는 안건 4개가 완성
- 이사회 개최방법(제41조 제4항) 및 의결방법(제43조)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개최시기 및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의 규약으로 규정 가능
- 제43조(이사회 의사) 2항은 이사간 이해충돌방지 차원에서 예시 조항으로 명시하였으나, 마을조합은 ①제한된 사업구역 내 ②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③다수의 주인이 참여하여, ④상호 빈번한 거래 및 사업교환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포함 여부를 신중히 검토 필요

제45조(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마을조합은 마을조합의 운영 및 사업의 수행과정 등에 있어 조합원 사이에서 또는 지역주민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위원회는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센터, 권역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조직 연합 소속의 전문가 등을 위원 총수의 2분의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갈등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며, 이 마을조합 정관 및 별도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마을조합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갈등관리위원회 설치 필요
- 갈등관리위원회의 위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은 반드시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반드시 포함
- 갈등관리위원회 관련 세부 규정 및 운영요령 등은 본 자치규범집에 수록된 **갈등관리위원회 규약 예시**를 참고(p.62)

5. 제5장 임·직원 및 사무국, 운영지원전문기관

- 제5장은 마을조합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핵심 조문은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61조

제46조(임원의 정수)

- ① 마을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7조(임원의 선임)

-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는 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협의체 활동에 ○년 이상 참여한 자로, 선출시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주민등록기록상 ○년 이상 거주한 자
 2. 마을조합에서 ○년 이상 조합원으로 활동한 자
 3.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지역을 포함한 ○○ 시/군/구 내에서 제62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년 이상 종사한 자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선출되는 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마을조합이 운영지원전문기관으로 선정할 기관의 임직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지역을 포함한 ○○ 시/군/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으로 활동한 자
 3.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적경제조직의 임직원으로 ○년 이상 활동한 자
- ④ **이사장은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 ⑤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⑥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6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선거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마을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모두 총회에서 선출
-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나 너무 많을 경우 이사회 개최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너무 적을 경우,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점에 유의(9~11명 내외가 적정)
- 마을조합은 일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달리 해당 지자체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기초로 설립되며 도시재생 사업 인프라의 운영관리가 주된 사업인 특징 보유
- 따라서, 임원의 자격사항을 지역 내 거주 여부 및 도시재생관련 활동 여부 등을 기준으로 명시
- 임원의 자격사항은 마을조합이 지역의 재생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을 유지하고, 지자체와의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공지원의 요건에도 적용되는 사항인 만큼 준수하는 것이 필요
- 사업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격기준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마을조합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 위한 장치 필요(예. 이사 총수의 과반은 사업 구역 내 거소를 둔 자 등)

제48조(선거운동의 제한)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마을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마을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마을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 포함)·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마을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마을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8조(선거운동의 제한)는 마을조합의 임원을 선출할 때,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금지규정을 열거한 내용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된 사항
-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는 임의기재사항으로 삭제해도 무방하나, 특히 임원의 자격규정이 까다로운 마을조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것을 권장
-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명시 가능

제50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마을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1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과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마을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0조(임원등의 결격사유)는 제47조(임원의 선임)에서 규정한 임원의 자격사항과는 별도로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명시한 제한 규정으로 반드시 준수
- 마을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다양한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원의 임기는 최대 4년 이내로 규정하도록 법에 명시

알아두기

협동조합기본법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의 제한이 없으나 마을조합의 민주성, 투명성, 다양성을 위해 임원 연임의 제한 명시 가능(예. 임원과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임금지)에 따라 임원의 1/3 이상은 직원 겸직 금지

제5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마을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 ○○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마을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4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마을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마을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및 제54조(감사의 직무)는 이사 및 감사의 직무를 규정
- 제54조(감사의 직무)에 규정된 감사의 직무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반드시 준수
- 감사는 마을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감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필수기관으로서 회계 지식을 갖추고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자로 선임 필요

제55조(감사의 대표권)

마을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에 의결을 준수하고 마을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마을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에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회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이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 제55조(감사의 대표권) 및 제 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는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된 규정
- 마을조합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마을조합과의 거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발생 가능
- 마을조합의 임원이 해당 마을조합과 거래하는 것은 자기거래적 성격이 있으므로 마을조합이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규정 추가 가능

➊ PLUS 임원과 마을조합 간의 거래

- 제00조(임원과 마을조합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마을조합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총회(또는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총회(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회(또는 이사회)의 의결은 제34조 제1항(또는 제43조 제1항)에 따라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6. 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기의 계산으로 마을조합의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합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 마을조합의 특성에 따라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 가능

※ 이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마을조합 또는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하였거나 명백하게 반대의를 표시하지 않은 이사는 협동조합기본법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따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 유의

제57조(임원의 수당 등)

비상근 임원의 수당 또는 상근임원의 보수는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정하거나, 규약 또는 규정에 의한다.

제58조(임원의 해임)

-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3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 ⑥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 임원의 수당 및 보수는 조합원의 결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 또는 별도의 규약·규정에 명시 가능
- 제58조(임원의 해임)은 제15조(조합원의 제명)과 마찬가지로 법에 규정된 절차 준용 필요



제59조(운영의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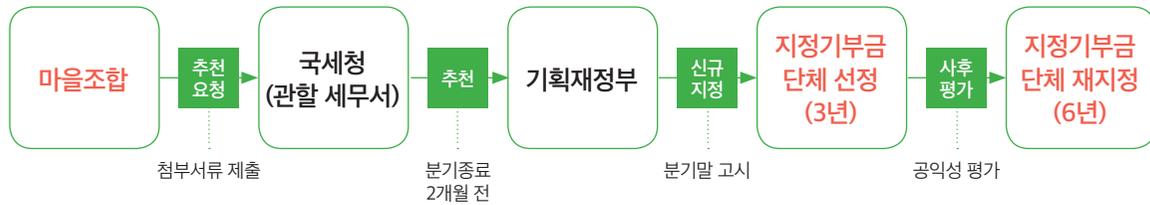
- ① 마을조합은 결산결과와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② 마을조합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조합원과 마을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마을조합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⑥ 마을조합은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 제59조(운영의 공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조합원은 운영사항에 대하여 조합에 청구 가능
- 마을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경영공시 의무대상이며 정관에 명시된 필수 사업을 포함한 제59조(운영의 공개) 6항의 사항을 반드시 공개

제59조의2(기부금의 공개)

- ① 조합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조합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 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 ④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마을조합은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므로 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가능
- 정관에 명시된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기부금 모집을 위해 아래의 절차 준용



제60조(사무국)

- ① 마을조합은 직원으로 구성된 **집행조직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총회 및 이사회 운영 지원
 2. 마을조합 홍보 및 조합원 모집
 3. 마을조합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4. 조합원 교육
 5. 그 밖에 마을조합 사업에 필요한 활동
- ② **사무국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되,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 및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총회와 이사회가 의결기구이자 논의기구라면, 사무국은 실행조직으로 제62조(사업의 종류)에 명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실무체계
-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제61조(운영지원 전문기관)

- ① 마을조합은 설립일로부터 **3년 동안 초기 운영 및 회계 관리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운영지원 전문기관을 선정**한다.
 1. **지역협동조합 금융기관**
 2.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3.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주체들과의 협업 경험이 있는 기관
 4. 도시재생사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보유한 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운영지원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현황 및 자원에 기반한 마을조합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2. 마을조합의 **회계관리 지원**
 3. 연차별 지원계획서, 지원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마을조합에의 제출
 4. 조합원 모집 및 마을조합 홍보 지원
 5. 그 밖에 마을조합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 ③ 마을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운영지원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운영지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운영지원전문기관은 갈등관리위원회와 더불어 마을조합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기관
- 운영지원기관은 마을조합의 자금·회계관리 등 운영지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역협동조합 금융기관(새마을금고, 신협) 및 도시재생사업,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보유한 기관(도시재생지원센터, 유관업종 사회적경제기업 등)으로 선정**
- 운영지원기관 선정 후 별도의 협약을 통해 마을조합 운영 및 회계 지원 등 연계 필요

6. 제6장 사업과 집행

- 제6장은 협동조합의 '사업체'로서 성격이 잘 드러난 장
- 본 장에 포함된 조문은 모두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

제62조(사업의 종류)

- 이 마을조합은 지역사업형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 사업
 - 사업
 - 사업
 - 사업
 - 사업
- 마을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 사업
 - 사업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마을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마을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 이 마을조합이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 일 것 (판단기준 기재)'으로 한다.
-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통한 정관변경 및 법인 등기를 새롭게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초기 정관 작성 시 많은 고민 필요



알아두기

정관 변경은 마을조합 정관(예시) 제35조에 따른 특별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합니다.

- 제1항의 주 사업에는 국토교통부 소관사업 및 마을조합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필요

PLUS 정관 내 사업 작성 예시

- 국토교통부의 소관사업 및 마을조합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기술

예시

▶ 건물임대사업(X) → 공공시설 운영관리사업(O)

- 마을조합의 소유건물이 아닌 지자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아 제3자에게 전대해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받는 것은 건물임대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공공시설 운영관리사업' 적합

-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사업명은 지양하며, 작성 시 실제 사업 내용이 드러나도록 '한국표준사업분류' 상 업종·업태명 참고해 작성 권장

예시

▶ 취약계층고용사업, 지역사회발전사업 등, 마을상점 사업(X) → 조합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제과점업(O)

- '시설운영 관련사업 등', 기타 각 호 부대사업, '각 호 외에 조합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아님에 따라 사용을 지양, ~등 붙이지 말 것

- 백화점 나열식으로 사업을 기술하는 것은 지양

예시

1. 마을 상점 운영 사업

가. 일반 음식점 나. 기타 음식점 다. 숙박시설 운영(X)

1. 마을 식당, 카페 운영 사업

2. 마을 숙박시설 운영 사업(O)

-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 가능한 사업을 기재

예시

▶ 집수리지원사업

- 비영리법인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건설업등록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경미한 건설공사(5천만원 미만인 종합공사,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만 수행할 수 있음에 유의

▶ 돌봄서비스 : 아동돌봄서비스(X) → 다함께 돌봄(O)

- 노인 또는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관계 법령, 신고 및 등록요건 등이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돌봄 대상과 서비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

※ 정관과 실제 수행사업이 상이할 경우 행정적 어려움 발생 가능



알아두기

마을조합 주 사업 예시

1.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사업
2.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업
3. 주택관리운영 및 집수리사업
4. 마을식당 운영사업
5. 주민출자형 태양광발전사업

- 제2항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마을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 제93조에 따른 필수사업
- 협동조합 7원칙 중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간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동일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마을조합은 대체로 '지역사업형'으로 공익사업을 수행
- '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 하거나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함에 유의

제63조(사업의 이용)

- ① 마을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〇〇〇
 2. 〇〇〇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3조의 규정을 통해,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사업 이용 가능
- 예를 들어 마을 식당의 경우 조합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고객이 제한되므로** 조합원이 아닌 지역 주민에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에게는 추가 가격 할인을 하는 방안 적용 가능

제6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매년 총회에서 필수적으로 ①**결산보고서**, ②**감사보고서**, ③**사업계획서**, ④**수지예산서**의 승인 필요

제65조(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등)

- ① 마을조합은 제62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 ② 마을조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물품공급, 용역, 건설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 등에 생산자조합원인 법인과 공동하여 입찰 및 참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을 우선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입찰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 마을조합은 설립 초기, **지역의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
- 마을조합 역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의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하면서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7원칙 중 하나인 '협동조합간 협동'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도 연결

7. 제7장 회계

- 제7장은 제6장(사업과 집행) 후의 후속 조치 개념
- 핵심 조문은 제66조(회계연도), 제69조(결산등), 제70조(손실금의 보전)

제66조(회계연도)

마을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67조(회계)

- ① 마을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해당 마을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마을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8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사업
2. ○○자금

-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체에서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
-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되므로 실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드물며 반드시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삭제 가능

제69조(결산등)

- ① 마을조합은 **정기총회일로부터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운영지원 전문기관이 선정된 경우에는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기 전에 **운영지원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
- ② 마을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손실금의 보전)

- ① 마을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익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② 마을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 정기총회일로부터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감사는 이를 근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 ※제54조(감사의 직무) 참고
- 앞서 정관 제6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서 언급한대로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이번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와 함께 매년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할 안건
- 마을조합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기 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운영지원전문기관의 검토 필요
- 제70조(손실금의 보전)는 조합원에 대한 배당 금지 규정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제98조에 명시된 모든 사회협동조합의 공통된 규정



알아두기

결산보고서 중에서 재무상태표까지는 어렵더라도 손익계산서의 항목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총손익은 “매출액-매출원가”이며, 이렇게 산정한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면 **영업손익**이 나옵니다.

임직원 급여,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매비 “영업손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을 하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이 나옵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후원금 등이 있고 영업외비용으로는 이자비용,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법인세 등을 제외하면 **당기순손익**이 나옵니다.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I. 매출액		- 업무추진비	
- 000사업 수입		- 세금과공과금	
- 상품매출 수입		- 접대비	
-		V. 영업손익	
II. 매출원가		VI. 영업외수익	
- 판매원가		- 이자수익	
- 서비스원가		- 지원금	
-		- 후원금	
III. 매출총이익		- 회비	
IV. 판매비와관리비		- 잡이익	
- 임직원급여		- 보조금	
- 퇴직급여		-	
- 상여금		VII. 영업외비용	
- 복리후생비		- 이자비용	
- 여비교통비		- 기부금	
- 통신비		- 잡손질	
- 감가상각비		-	
- 차량유지비		VIII. 법인세차감전손익	
- 회의비		IX. 법인세등	
- 사무용품비		X. 당기순손익	
- 지급수수료			

8.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1조(합병과 분할)

- ① 마을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마을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마을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2조(해산)

- ① 마을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 1. 총회의 의결
 -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 3. 설립인가의 취소
- ② 이사장은 마을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청산인)

- ① 마을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4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마을조합이 해산 후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고로 귀속한다.

- 제74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의 청산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사항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에 명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규약·규정 예시

1. 총회 운영 규약 예시

1) 총회 운영 가이드

일정	구분	준비 사항	비고
2개월 전	총회 일정 수립	• 총회 개최일정 확정	이사회
		• 총회 개최일정 안내(조합원 대상) 및 장소 섭외	사무국
1개월 전	총회 안건 검토	• 필수 준비 안건 준비 ①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 ② 결산보고서 작성 • 안건 검토 ① 정관 및 규약 변경 필요 여부 ② 임원 임기 도래 여부 ③ 조합원 제명 필요 여부 ④ 탈퇴 조합원(출자금 환급) 여부 ⑤ 기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안건 논의	이사회
20일 전	추가 안건 및 결산 검토	• 총회 안건 및 계획 초안 공유(조합→조합원)	이사회(사무국)
		• 결산보고서 검토 ※ 조합원 제안 발의 여부(정관 제32의2) - 조합원 1/5 이상 동의 후 이사장에게 제출	운영지원전문기관 조합원
10일 전	총회 안건 확정	• 필수 안건(사업계획·예산안/결산) 확정 • 추가 안건 확정 • 결산보고서 제출(조합→감사)	이사회
		• 감사보고서 작성 • 자료집 제작(인쇄) • 총회 개최 공고(공고·개최일 제외 7일)	감사 사무국
7일 전	총회 준비	• 총회 참석자 확인(과반수 출석 독려) • 대리인 자격 및 중복 여부 확인 • 기타 총회 실무(장소, 시나리오, 사회 등) 점검	사무국
총회 이후	후속 조치	• 총회 의사록 작성 및 비치(3인 이상 기명날인) • 총회 참석자 명부 및 위임장 비치 •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조합원 공지 ※(출자금 변동 시) 조합원에게 통지	사무국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운영규약의 작성예시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운영규약의 작성예시>는 『협동조합이라면 알아야 할 협동조합 규약 규정집』(서울특별시협동조합지원센터, 2020)에 수록된 '총회 운영규약'을 마을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마을조합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각 마을조합의 취지와 특색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및 정관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라 한다)」 정관 제39조에 따른 총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안'은 총회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안건을 말한다.
2. '안건'은 논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며 의안과 그 밖의 사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3. '의결'은 의논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과 부결을 포함한다.
4. '표결'은 안건에 대하여 가부 의사를 표시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총회의 운영

제4조(총회개최공고)

공고방법은 정관 제32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총회소집통지)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물 발송하거나 전자문서(이메일) 또는 SNS로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재적조합원의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개최 ○일 전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7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총회개최일 총회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권 및 선거권)

- ①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정관 36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의결권이 없다. 1. 총회일 현재 정관으로 정한 최소 출자좌수를 납입하지 않은 자 2. 총회일 현재 탈퇴처리 된자 또는 총회에서 제명이 승인된 자

제9조(대리인의 자격)

- ① 대리인의 자격은 기본법 23조(의결권 및 선거권)와 정관 제37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조합의 지정된 양식에 따라 총회 개회 ○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참여 및 외부인사참석)

- ① 사외이사 및 간부를 비롯한 조합의 직원 등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도 총회에 참관인으로 배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정족수)

- ①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의 사항
 6.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 ② 조직변경의 경우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결사항)

-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기본법 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와 정관 제33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의 동의를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 ③ 총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정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13조(의사의 진행)

- ①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정관으로 정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정회 또는 회기 연장)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은 정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표결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은 총회의 의견을 들어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표결절차)

표결절차는 아래 각 호 사항의 순서대로 한다.

1. 의안에 대한 제안 및 설명은 이사장 또는 제안자가 한다.
2. 의안에 대한 동의와 제청
3. 표결방법 제안
4. 표결
5. 결정사항에 대한 공표

제17조(표결의 순위)

-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8조(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서기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의사록에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② 기명날인된 의사록은 5년 이상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총회공고일자
3. 개최 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 및 참석 조합원 수
5. 회의의 목적 사항
6. 전차의사록 낭독 및 승인여부
7. 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OO마을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2. 이사회 운영 규약 예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 운영규약의 작성예시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 운영규약의 작성예시>는 『협동조합이라면 알아야 할 협동조합 규약 규정집』(서울특별시협동조합지원센터, 2020)에 수록된 '이사회 운영규약'을 마을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마을조합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각 마을조합의 취지와 특색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및 정관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라 한다)의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임이사”라 함은 등기된 이사로 조합에 상시로 출근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의결권이 있는 임원을 말한다.
2. “비상임이사”라 함은 등기되지 않은 이사로 상시로 출근하지 않고 이사회 소집시 참석하는 임원을 말한다.

제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장)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6조(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③ 정기이사회는 매월 마지막 ○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요일 전후 2주내에 소집할 수 있다.
- ④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결의방법)

-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결사항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에 대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집행을 유보하고 심의 자료를 보완하여 이사회에 안건을 재상정 할 수 있다.

제8조(결의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1. 총회에 관한 사항가. 총회의 소집 및 이에 제출할 의안 나. 계산서류와 부속명세서에 관한 의안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가. 상임이사 및 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나. 비상임이사의 출석수당 등 실비의 결정다.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본 규정 및 마을조합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경영목표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종합예산의 결정·변경 가.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나.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예산의 변경다. 예비비의 사용. 다만 이사회내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위임한 것은 제외한다.
 6.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사항
 7.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권리의 득실에 관한 사항

9. 직원의 인사(징계, 포상, 승진, 정원 등)에 관한 사항
10.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절차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11. 관계법령, 정관 또는 조합 내규에서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12. 기타 이사장이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제9조(보고사항)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운영감사, 회계감사 등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2. 단체협약 체결시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3. 그 밖에 이사회가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4. 기타 이사장이 특별히 보고하는 사항
- ② 감사는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이사회내 위원회)

- ①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중 특정사항을 심의하거나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은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도 이사장 또는 소속 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지받은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위원회의 성립과 결의, 의견청취 및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11조(위원회 등)

- ① 이사회내에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 하는 기관이 될 수 없다.
 1.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며 위원은 이사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 가. 제8조 제1항 2호 다목에서 정한 규정 외의 규정의 내용에 관한 사항

나. 경영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

- (1) 기본경영방침과 계획
- (2) 이사회 의결로 사용 목적이 정해진 예비비의 사용

다.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 (1) 인사와 급여체계의 변경

라. 중요한 계약과 협약에 관한 사항

- (1) 위탁 또는 수탁업무계약의 체결
- (2) 근로계약 등 기본적 사항

마. 협동조합 내규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바. 기타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과 이사장 또는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3.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는 사업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 될 수 없다.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비상임이사 2인 이상으로 한다.
 2. 사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가. 기획조정, 경영지원, 홍보, 정보전산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나. 이사장과 감사의 직무청렴계약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3. 정기 사업위원회는 반기별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사업위원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이사회는 기획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 될 수 없다.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비상임이사 2인 이상으로 한다.
 2.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가. 사업기획, 타당성조사, 적정성조사, 시장관리, 공모사업, 연구개발 및 통계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나. 기타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제12조(비상임이사)

- ① 비상임이사는 필요시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 ① 의장은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조합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이 있지 아니하다.

제14조(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라 이사회 회의와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참석자 발언 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작성된 회의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를 협동조합 주사무소에 비치한다.
- ③ 의사록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의사록 작성은 이사 중 1인으로 한다. 작성자는 이사회를 진행하며 이사장이 지명하여 결정한다.

제15조(간사)

이사회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이사회 운영업무를 담당할 조합원 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OO마을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3. 임원 선출 규약 예시**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선출규약의 작성예시**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선출규약의 작성예시>는 『협동조합이라면 알아야 할 협동조합 규약·규정집』(서울특별시협동조합지원센터, 2020)에 수록된 ‘이사회 운영규약’을 마을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마을조합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각 마을조합의 취지와 특색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및 정관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OO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OO마을조합”이라 한다.)의 임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의 후보자등록과 후보확정 등에 관하여는 해당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형위원회”란 추천받은 임원후보자의 자격을 확정하거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사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란 협동조합의 임원 선거를 총괄하는 임시기관으로 협동조합의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선거인의 자격)

선거인 및 피선거인의 자격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며 선거인명부(조합원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조(추천(선출)위원회의 구성)

이사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확정을 위해 전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각 호에 의한다.

1.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는 ○인으로 구성하되 임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2.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전형위원이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당연상실된다.

제6조(입후보자 등록 공고)

- ① 선거관련 공고사항은 정관 제6조로 정한 공고방법에 따르며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연락처, 이메일로 개별 공지한다.
- ② 공고는 총회개최일 최소 20일 이전에 공고한다.
- ③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거할 임원 및 그 자격,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 등록 기간
 5. 등록 접수 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임원후보추천 및 등록)

- ① 선거 공고에 따른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임원후보등록기간을 가진다.
- ② 조합원은 임원후보등록기간내에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③ 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선관위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조합원 증명서
 3. 이력서
 4. 전형위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제8조(전형위원회가 정수 범위 내에서 추가추천을 할 수 있는 경우)

- ① 입후보자 등록기간동안 등록된 임원 후보자 수가 임원 정수에 미달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달된 수만큼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② 조합원 중에서 임원후보자를 전형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 외의 자를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③ 추천받은 입후보자는 등록신청서, 전형위원회의 추천서를 선거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중추천의 금지)

조합원은 이사후보자 1인, 감사 후보자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 중복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는 조합원을 추가로 추천하여 보완토록 한다.

제10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본법 39조에 따른 임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
2. 정관 제47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
3. 조합의 사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자.
4. 조합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자.

제11조(자격심사)

- ① 후보자등록이 마감된 후 전형위는 등록된 임원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전형위는 등록된 임원후보자의 기본법 36조 임원의 결격사유, 기본법 44조 임직원 겸직 금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전형위는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거쳐 결과를 입후보자에게 통보한다.
- ④ 전형 경과와 확정된 임원후보자 명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후보자의 확정)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일 이내에 확정된 임원후보자 현황을 총회 공고 시 첨부하거나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 ② 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해 재공고를 해야 한다.
- ③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에 따른다.

제13조(후보자 등록의 무효)

- ① 후보자 등록 후에 임원의 결격사유 또는 임직원 겸직금지에 해당하여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면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 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 1일 전까지 선관위에 본인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선거공보)

후보자를 확정된 후 선거일 ○일 전에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공고하거나 개별조합원에게 공지할 수 있다.

제16조(선거방법)

-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 또는 거수로 한다.
- ②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7조(이사장의 선거)

- ①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를 선출 후, 이사중에 호선하여 추천하거나, 조합원의 추천에 의해 선출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이사장후보 이외에 추가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추가추천이 있는 경우, 경선을 통해 최다 득표자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추가추천이 없을 경우, 이사회 추천 이사장 후보에 대한 신임을 총회에 묻는다.
- ⑤ 이사장 후보 추천이 없을 경우, 총회를 폐회 하고 1주일 내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

- 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 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 ③ 2차 투표는 휴회 후 다시 진행하거나, 1주일 내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9조(투표방법 및 개표관리)

투표방법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20조(당선인의 확정)

- ①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수 이상 득표 자 중에서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투표로 결정한다.
- ③ 임원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정수와 같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당선인의 선포)

- ① 위원장(의장)은 개표 결과 결정된 당선인을 즉시 선포하여야 한다.

- ② 당선인은 취임승낙 여부를 총회 후 7일 이내 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임기개시일)

-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취임승낙서 제출일로 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마을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4. 갈등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예시

1) 갈등관리위원회 운영 가이드

• 갈등관리위원회 필요성

- 마을조합은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많은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기능회복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 한정된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결합되어 있고 행정과 협력체계를 유지해야하는 마을조합은 태생적으로 다양한 갈등 요소를 내포
- 또한, 협동조합은 사업체이자 결사체로 조합원간 토론과 상호 협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나, 주식회사에 비해 낮은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일부 협동조합에서 갈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토로
- 조합원 및 조합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해소와 갈등 예방을 통해 보다 생산적인 마을조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필요



알아두기

갈등은 당연한 것

- 같은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마을조합의 조합원들은 '갈등'이라는 단어에 무척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역사회에서 '갈등'은 소모적이고, 부정적이며,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해온 경험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명목으로 갈등을 드러내지 않거나 보이는 갈등을 애써 무시하려 합니다.
- 하지만, 마을조합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인 모든 공간에서는 갈등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갈등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여 빨리 드러내고 빨리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 갈등관리위원회 운영 요령

- '갈등관리'라는 단어에 주목하여 이미 발생한 갈등 상황에서만 운영하는 것은 지양
- 갈등의 '예방'과 관리의 '내재화'를 위해 갈등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조합원 의견 청취, 갈등요소 점검, 사무국 및 이사회 운영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 개최 필요
- 또한, 외부 전문가와의 소통·자문·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

PLUS 마을조합의 갈등 해소 사례

[조합 현황]

- 00마을조합은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에서 설립된 마을조합으로, 마을카페, 주차장 관리, 돌봄센터 및 행복주택 관리 사업 등을 준비 중
- 15명의 지역주민이 설립에 뜻을 모아, 1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조합 설립

[갈등 요인]

- 사업 초기 일부 지역 주민들이 목욕탕 운영 사업을 제안하며 공간과 내부 시설 장비 등을 지자체에서 마련해줄 것을 요구
- 목욕탕 운영 사업의 적절성, 지자체 지원 범위, 마을 조합의 역할 등에 대해 주민간 의견이 나뉘며 갈등 촉발

[갈등 해소]

- 조합원들은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자체, 외부 전문가와 자리를 마련
- 지자체, 외부 전문가 등은 목욕탕 사업을 제안한 주민들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상가능한 문제 (인허가, 수익성 등)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결국, 사업을 제안한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의 적절성을 확인한 뒤 다른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갈등 해소

[갈등 이후]

- 갈등 상황을 경험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가 갈등 예방을 위한 정기 소통 워크숍 개최
- 또한, 의견과 감정을 분리해 대화하는 방법 및 회의 운영 요령 등의 학습을 통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역량 향상

[갈등 해결 포인트]

- ① 참여와 검증 - 주민 스스로 사업 타당성 판단 및 검증
- ② 대화와 협의 - 정례적 소통 모임 개최
- ③ 공동체 훈련 - 대화하는 방법 및 회의 운영 요령 습득
- ④ 전문가 참여 - 조합원 외 지자체, 전문가 등 참여를 통한 갈등 해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갈등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예시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갈등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예시>는 『협동조합이라면 알아야 할 협동조합 규약 규정집』(서울특별시협동조합지원센터, 2020)에 수록된 ‘총회 운영규약’을 마을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마을조합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각 마을조합의 취지와 특색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33조 및 정관 제42조(이사회 의결사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라 한다)」 정관 제45조에 따른 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마을조합의 운영 및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이해관계자”란 갈등의 원인이 된 ○○마을조합 운영 및 사업상의 문제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조정”이란 조정인의 개입으로 당사자 사이의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내 갈등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중재”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갈등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마을조합의 운영 및 사업의 수행과정 등에 있어 조합원 사이 또는 지역주민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조합의 운영 및 사업의 수행과정 등에 있어 조합원 사이 또는 지역주민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을 위한 자문
2.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조정 또는 중재
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에 대한 자문
4.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 기타 지원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마을조합이 요청하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갈등해결의 원칙)

-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갈등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갈등의 예방 및 조정·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갈등의 당사자 외 이해관계자 등을 그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구성)

- ① ○○마을조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전문가 위원이 전체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의 수가 짝수일 경우, 의사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홀수를 권장

- ② 전문가 위원은 ○○마을조합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기구, ○○마을조합 사업구역이 속한 권역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조직 연합 소속의 전문가 중에서 마을조합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 ④ 전문가 위원이 아닌 위원은 마을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재적위원 과반수의 개회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만 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에 대한 자문, 결정 등을 위하여 ○○마을조합의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은 갈등 예방 및 해결 등에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회의방청)

① 이해관계자가 회의의 시작 전에 위원장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방청을 허락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청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1. 폭력·욕설·위력 등으로 질서유지 및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2. 허가 없이 녹음, 비디오 및 사진 촬영을 하거나 식음·흡연 등 회의의 진행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 갈등관리위원회의 투명성 및 개방성을 위한 조항

제8조(조정·중재)

① 위원회는 갈등에 직면한 당사자(조합원 또는 지역주민) 전원이 합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 중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의 조정인 또는 중재인을 선정하여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 통상 조정인은 1인, 중재인은 1인 또는 3인으로 선정

② 조정인 또는 중재인은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공익과 사익, 사회적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적정·공평하게 갈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③ 조정인 또는 중재인은 조정 또는 중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된 갈등사안의 개요
2. 조정기일 또는 중재기일에 관한 기록

3. 조정결과 또는 중재판정

④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거친 당사자들은 조정결과 또는 중재판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 마을조합 정관 제○○조에 따라 제명될 수 있다.

제9조(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정인 또는 중재인에게도 적용한다.

제10조(사임·해촉)

① 위원(위원장 포함한다)은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위원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마을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등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신의성실의무 등)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신의성실의 자세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조정인 또는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 공평하게 갈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엄수의무 등)

위원과 조정인 또는 중재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나 정보 등 일체의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단, 법령 또는 행정규칙, 재판절차 등에 의해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등)

필요한 경우 위원과 조정인 또는 중재인에 대하여 ○○마을조합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마을조합 이사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마을조합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A부터 Z까지

정관의 이해편

발행일 | 2022년 4월

발행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디자인 | (주)전우용사촌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 (6~8층)

홈페이지 | www.socialenterprise.or.kr